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이 질권의 행사 등으로 개인·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후 납부해야 하는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에 특허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료의 70%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9. 2. ~ 10.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반려”를 “무효·반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전받는 경우에는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가. 질권의 행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다. 신탁의 설정

11.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1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제7조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제11항 전단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에 따라 출원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가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않거나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출원료 등을 감면 받지 못하고 납부하였을 때 출원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출원료 등의 사후 감면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나목 중 “최초 3년분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와”를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등과”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7호가목3)을 삭제한다.

다. [은행 및 계좌번호]란은 위 신청인(대리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주의: 계좌번호 예금주의 실명번호는 [반환신청사항]의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만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환 처리되지 않습니다. 외국계 은행(씨티은행 제외), 국고계좌, 가상계좌(CMA 계좌 등), 상호저축은행(일부)의 계좌로는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은행 및 계좌번호]00은행 676-01-12345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은행에 대한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9호의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그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신청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앞쪽)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신청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

[감면신청사항]

[감면(면제)사유]

[반환신청사항]

[성명(명칭)]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은행 및 계좌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반환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 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특허료 · 등록료 ·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p> <p>1. ~ 9의3. (생략)</p> <p><u><신 설></u></p>	<p>제7조(특허료 · 등록료 ·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9의3. (현행과 같음)</p> <p>9의4.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 ·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전받는 경우에는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p> <p>가. 질권의 행사</p> <p>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p> <p>다. 신탁의 설정</p>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우선심사신청료의 금액.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2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가. ~ 라. (생략)

<신설>

10. -----
----- 2024년 12월 31
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무
효·반려-----

-----.

가. ~ 라. (현행과 같음)

11.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10건 (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

료의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⑫ ~ ⑰ (생략)

-----.

⑫ ~ ⑰ (현행과 같음)